

의안 번호	336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0. 18.

전문위원 강영숙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36호

다. 제출일자 : 2024. 10. 14.

라. 회부일자 : 2024. 10. 15.

2. 제안이유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리증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전입 즉시로 변경하여 성북구에 전입한 대상자의 수당 지급의 연속성 도모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나. 보훈예우수당의 확대 지급을 위하여 대상 관련 조항 정비  
(안 제8조제1항~제4항)
- 다. 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등 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1) 소요예산 : 774,000천원
    - 보훈예우수당 신규대상자(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분 30천원\*2,150명\*12회  
 $=774,000천원$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22. ~ 2024. 09. 11.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성북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제1항은 기존 조례에서, 서울시 보훈수당(참전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지급대상자를 우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음. 이는 서울시 타구 보훈대상자 외의 형평성을 감안한 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목적을 둔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함.

※ 2024. 10월 현재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22개구

▶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25년 성북구 신규 대상) : 2,150명('24.1~6월 평균)

<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현황 (2024. 9월 현재) : 총 1,910명 >

1.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1,664명 (월 15만원)
2.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4.19유공, 5.18유공, 특수임무,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160명 (월10만원)
3. 생활보조수당(국가유공자 선 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86명 (월20만원)

< 성북구 보훈수당 지급 현황 (2024. 9월 현재) : 총 1,936명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선 순위 유족) : 1,936명 (월 5만원)

-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및 안 제10조(위문금 지급)는 기존 조례에 “3개월이상 거주자”로 명시하였던 거주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성북구 전입 즉시 연속성 있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임. 이는 ‘24. 7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sup>1)</sup>이기도 함.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①(생략)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중 <u>국가보훈처</u>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u>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p> <p>② (삭제 2019.12.26.)</p> <p>③ <u>보훈예우수당</u>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lt;신설&gt;</p> <p>④ <u>보훈예우수당</u>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중략… &lt;신설&gt;</p>	<p>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 -----<u>국가보훈부</u>----- -----<u>거주하는</u> ----- -----.(삭제)</p> <p>② <u>수당</u>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p> <p>③ <u>수당</u>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중략).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p> <p>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제6조의4(위문금 지급)① 생략……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u>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위문금 지급)① 생략……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u>거주하는</u>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안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기존 조례상 규정되어 있던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삭제하였음. 이는 지급액 인상 등에 따른 변경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수당을 운영하여 수혜대상자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1)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2632(2024.7.10)호

지자체 조례의 보훈수당 거주기준을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수당지급 혼선 및 민원발생 예방,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 조속 정비 권고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3(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u>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u>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중략)            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① -----            -----            -----사망위로금을-----.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중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 안 제11조(수당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12조(지급대상의 관리 등)는 신설 규정으로 지급대상자 사망, 전출입, 부정수급자 등의 수당 지급 중지와 환수 등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조문 정비사항으로 '23.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급 관련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성북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수당 지급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함
- 다만 서울시 보훈수당 중복지원금지 규정 삭제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기에 집행부의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 (확대 대상) 서울시보훈수당(3종) 지급대상자 : 2,150명('24.1~6월 평균)
  - ▶ 시행일자 : 2025. 1. 1
  - ▶ 소요 예산(안) : 774,000천 원 (1인 월3만원)
    - 보훈예우수당 신규대상자 2,150명\*3만원\*12회=774,000천 원